



국민권익위원회

기 해 년

새 해 복 많이 받으 세 요 !

**청탁금지법,**  
**명절 선물 주고 받기**  
**어렵지 않아요 ~**





명절선물  
Tip 1



HAPPY NEW YEAR

- 1 친구, 친척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(O).**
  
- 2 공직자가 친구, 친척,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(O).**

명절선물  
Tip 2

5만원

10만원

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\*  
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  
사교·의례 목적으로 주는  
명절 선물

농수산물·농수산 가공품\*\*



\*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,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

\*\* 농수산물에는 축산물·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.



명절선물

Tip 3

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

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, 그 외 선물은  
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

농수산물  
선물  
5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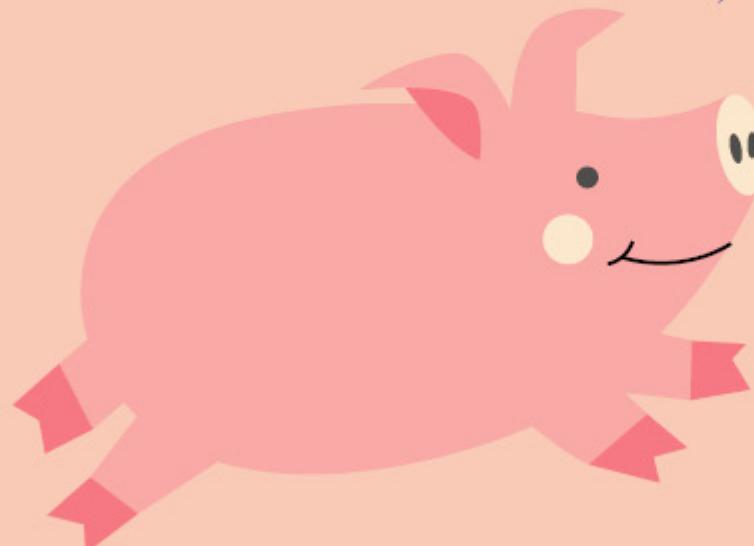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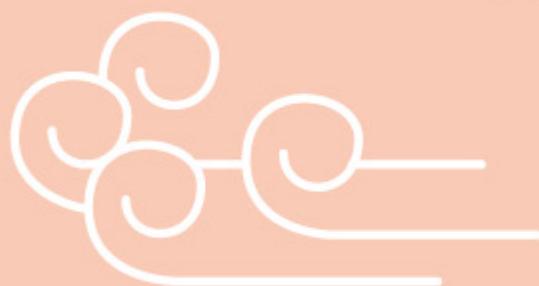
가능

그 외  
선물  
5만원

농수산물  
선물  
4만원

불가능

그 외  
선물  
6만원





- (1) **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.**
- (2) **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\***에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.

인허가 신청 민원인, 지도·단속 대상자, 입찰 참가자, 고소·고발인, 피의자 등



**담당 공직자**



#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

명절선물  
**TIP 5**

**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  
(공직자의 배우자)인가요?**

NO  
아니요

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 YES

**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?**

<예시>

- 친족이 보낸 경우
- 상급자 → 하급자
-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른 제공
- 기념품, 홍보용품, 경연·추첨 등
-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

NO  
아니요

**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 
직무 관련이 있나요?**

NO  
아니요

5만원 넘는(100만원 이하)  
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예 YES

5만원 넘는 선물도  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예 YES

**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의  
목적이 인정되나요?**

NO  
아니요

금액에 상관없이  
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예 YES

5만원 이하의 선물을  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5만원 이상의  
선물을 받은 경우

**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,  
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**

<예시>

- 인·허가·지도·단속 등 담당 공직자
- 입찰, 감리 등 담당 공직자
- 인사·평가, 감사 등 담당 공직자
- 고소·고발, 심판·조사 등 담당 공직자